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0-13

울 산 지 방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8구합534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

피 고 1. [redacted]세무서장

2. [redacted]군수

변 론 종 결 2018. 8. 30.

판 결 선 고 2018. 11. 1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 [redacted]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5,427,35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.
2. 원고의 피고 [redacted]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[redacted]군수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0-13

피고 [redacted]세무서장이 2017. 12. 1.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4,650,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 피고 [redacted]군수가 2017. 12. 1. 원고에게 한 지방소득세 13,309,940원의 부과처분 및 2018. 2. 5.(소장 기재 2018. 2. 6.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고친다)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주식회사 B(이하 '이 사건 회사'라고 한다)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로서, 이 사건 회사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C주유소로부터 세금계산서 4장을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.

나. 피고 [redacted]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·고지하는 한편, 2014. 12. 13. 원고에게 2012년 귀속분 320,054,9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하였다.

다. 그에 따라 피고 [redacted]세무서장은 2017. 12. 1.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29,222,880원 및 지방소득세 12,922,280원을 납부기한 같은 달 31.로 하여 부과하였다(이 중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'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'이라고 한다).

라.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위 종합소득세 129,222,880원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3,876,680원의 가산금이, 그 이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0-13

후 2018. 2. 28.까지는 추가로 1,550,670원의 가산금이 부과되어 총 5,427,350원의 가산금(이하 '이 사건 종합소득세 가산금'이라고 한다)이 부과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.

마. 한편, 피고 [redacted]군수는 원고가 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8. 1. 12. 원고에게 2018. 1. 31.까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독촉고지를 하였다. 원고가 여전히 위 기한까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, 피고 [redacted]군수는 2018. 2. 5. 원고에게 재차 독촉고지를 하면서 가산금 542,720원을 포함한 총 13,465,000원의 지방소득세 체납액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한 뒤, 그 무렵 체납액 및 부동산 압류를 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(이하, 가산금을 포함한 지방소득세 13,465,000원을 독촉하는 취지의 통지를 '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', 원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을 '이 사건 압류처분'이라고 하고,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합쳐서 '이 사건 각 처분'이라고 한다).

바.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7. 12. 15.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, 2018. 2. 8.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 조세심판원은 2018. 3. 28.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 내지 4호증, 을가 제1 내지 5호증, 을나 제1, 2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.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종합소득세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

직권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.

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0-13

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,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,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,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,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,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,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, 그러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(대법원 2000. 9. 22.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).

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, 피고 [redacted]세무서장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가산금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에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, 달리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, 이 사건 종합소득세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.

따라서 원고의 피고 [redacted]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.

3. 피고 [redacted]군수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 [redacted]군수는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은 피고 [redacted]세무서장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[redacted]세무서장이 그 적법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바(피고 [redacted]군수 제출 답변서 참조),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0-13

이를 피고 [redacted]군수가 피고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.

살피건대,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,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·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므로,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(대법원 2005. 2. 25. 선고 2004두11459 판결 등 참조).

따라서 원고가 피고 [redacted]군수를 상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다투는 것은 적법하고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[redacted]군수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.

다만, 피고 [redacted]군수가 피고 [redacted]세무서장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밝혀야 한다고 하면서도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있으므로, 이하 본안에서는 피고 [redacted]군수가 해당부분에 관하여 피고 [redacted]세무서장의 주장을 원용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.

4. 본안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단순히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 남편의 누나의 남편인 D이다.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

나. 판단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0-13

1) 법리

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,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.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·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,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.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(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1두9935 판결).

2) 판단

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하였는지 보건대,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,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내지 실사업자 중 한 명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볼 것이다.

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,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0-13

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(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),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.

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은 원고와의 관계, 위 증인의 재산 및 조세체납상태, 위 증인이 1억 원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.

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, 7호증의 각 기재 역시,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E에서 원고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회신하는 등(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참조) 그 자체로 의문스러운 점, 원고가 다른 곳에 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활동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거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.

② D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내지 대표이사였다면 이 사건 회사에 D가 관여한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인데,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 이외에 D와 이 사건 회사의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.

③ 오히려 을가 제6 내지 9,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각종 서류에 원고가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,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에도 원고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던 사실,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아온 사실,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폐업신고서에도 그 내용을 직접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0-13

기재하고 서명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, 이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활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다. 소결론

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.

5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[redacted]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가산금 5,427,35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, 원고의 피고 [redacted]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[redacted]군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0-13

별지

목록

[건물] [redacted]군 [] []빌라 제3층 []호

(1동 건물의 표시)

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 경사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

1층 164.86㎡

2층 164.86㎡

3층 164.86㎡

4층 164.86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[redacted]군 [] 대 513㎡ 제3층 []호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3층 []호 철근콘크리트조 76.71㎡

(대지권의 표시)

8분의 1. 끝.